

1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관련 Q&A

1 올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규 제공되는 자료는?

- '19년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인 산후조리원 비용('19.1.1.이후 지출분)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으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19.7.1.이후 지출분)에 대하여 추가 제공되며,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금액에 대해서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이용가능한 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인증서가 없는 분은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①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 국가기관 등이 발급하는 ②와 ③의 인증서도 이용가능합니다.
- ① 공인인증서(개인용): 범용공인인증서, 금융기관용공인인증서
- ②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개인용)
- ③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인증서(개인용)

3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후 취소는 가능한지?

-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에 대해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에서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발급기관별 또는 개별 건별로 자료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본인 자료만 삭제 가능)
-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직접 발급받아야 됩니다.

4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자료 출력 및 다운로드시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시 동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 그대로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제와 다르게 신청하여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어떻게 공제받나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중고생 교복·체육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기간을 선택하더라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자료는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됩니다.

7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1. 20.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수정되지 않는 것이지요?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 15.부터 조회가 됩니다. 다만, 의료비 등 간소화 자료의 누락이 발견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은 1. 15.~1. 18.까지 추가·수정 자료를 홈택스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추가·수정된 자료는 매일 반영하지 않고 1. 20.부터 최종 제공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20. 이후에도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공제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접속 후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8:00 ~ 24:00까지 이용가능합니다.
-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1. 15. ~ 1. 25.)에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20분(30분)간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 따라서, 로그아웃 경고창(로그아웃 5분전, 1분전)이 뜨면 작업하시던 내용을 저장하시고 다시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고지금액(2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합계액)과 소득월액보험료 납부금액(보수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소득공제(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 받을 수 있습니다.

1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조회화면에서 회사에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 금액보다 적게 조회됩니다.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공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보수월액 보험료에 대해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에 확인하여 별도 관련 영수증 제출없이 급여에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또한 소득월액 보험료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납부내역(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1

회사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 회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 납부금액과 국민연금보험료 중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 *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액: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것
-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납부액: 구직급여 수급자가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

1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 고지금액과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입니다.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 다만, 공단에서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된 시기를 알 수 없어 고지 금액을 제공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국민연금보험료에 포함된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 후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납부액을 소득공제 받으면 됩니다.

13 올해 새로 취업을 하게 되어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취직 전에 납부한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국민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지역가입자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4 배우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은 이유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부양가족의 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동의가 되어 있는데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 영수증을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보험료 자료는 계약자별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된 경우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충족 필요)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공제 대상입니다.

1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가 조회가 가능한가요?

- 병원에 지출한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사생활)로서 별도 구분 없이 의료비로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합니다.
- 의료비 내역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중 산후조리원 비용이 조회 가능한가요?

- 2019년 이후 산후조리원 비용은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 산후조리원이 의료비자료로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17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20. 1. 15.~1.17.까지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1.18.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1.20. 최종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모바일)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신고센터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기기 등 구입 비용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의무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 1. 20.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18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을 구입했으나 이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의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국세청에서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나 판매처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구입비용은 구입처에서 발급하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9

올해 태어난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 병원 등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의료비 등 공제증명 제출 받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교육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국세청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대학원 교육비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교복구입비(학교주관 공동구매,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한 교복 구입비) 등 교육비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와 국외 교육비용은 자료제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에도 관련기관에서 교육비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하는 경우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육비납입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한 중고생 자녀 교복구입비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국세청에서는 본인과 부양가족이 프랜차이즈 교복판매점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교복 구입 내역을 수집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복구입비 항목의 교복구매정보를 클릭하여 학생명을 선택하면 중·고생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공제자료에 반영됩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조회 발급 ⇨ 교육비 ⇨ 교복구입비 ⇨ 교복구매정보 ⇨ ‘학생명’ 선택하고 등록하기

- 조회되지 않는 경우 미성년 자녀 자료조회 신청 후 조회를 해보시고, 자료제공동의 후에도 교복구입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복판매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2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교육비는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업료,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3 미취학 자녀의 학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자녀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미취학 자녀를 위해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경우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교육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미취학 아동을 위해 지급한 경우에만 교육비 대상에 해당하며, 초·중·고·대학생(대학원생) 및 성인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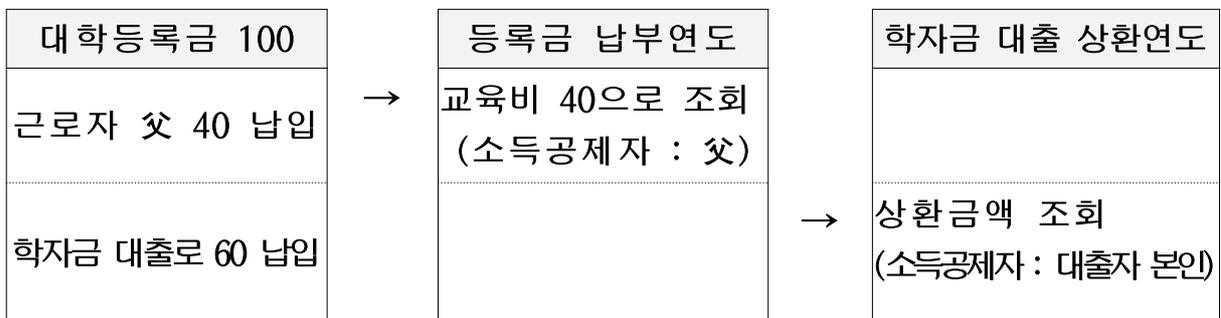
2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대학교 교육비로 조회되는 금액이 등록금과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대학교 교육비 중 장학금 및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입한 등록금이 포함된 경우 이를 뺀 금액이 교육비 공제금액이므로
- 대학교에서 학자금 대출금과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교육비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25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등록금 납입시가 아닌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시 상환액이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대출받은 본인의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되며
- 등록금 납입시에는 대학교 교육비 납입금액에서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가 차감되어 조회됩니다.

<사례>



26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 아닌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였는데 이런 경우 대학교 교육비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나요?

- 일반 금융기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등에서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입하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납입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간소화서비스에서 납입한 교육비가 조회가 되지 않은 경우 학교 등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7

대학다닐 때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고 현재 직장에 취직하여 대출금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상환했던 금액과 다르게 조회가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한국장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행복기금(자산관리공사)이 제출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제공하며, 제공되는 자료가 실제 상환액과 다를 경우 자료제출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20.1.10.까지 원천공제의무자인 회사가 제출한 상환금명세서를 기준으로 상환내역을 제공하므로, 상환금명세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1월 중 발생한 자발적 상환 등의 거래로 인해 실제 상환내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20.2.1. 이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원리금납입증명서를 개별 발급받아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8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제외 대상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부가 다르게 표시되는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제외금액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사업자 또는 카드사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을 구분하여,
 - 이를 기초로 카드사는 회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간소화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비용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 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29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 판매분을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으로 확인

30

도서나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비로 조회되지 않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보원)에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에게서 구매한 경우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비로 지출한 금액은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됩니다.

○ 또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지연등록하거나 결제대행업체(PG)의 결제 금액 구분 오류 혹은 일부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한 경우 도서·공연비로 조회되지 않고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31

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비 등으로 조회되지 않고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카드사 등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서 도서·공연비 등 사용금액이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카드사로부터 재발급받거나,
 - 재발급이 안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할 때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지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영수증 등 증명자료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은 일반사용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과 동일하게 적용받으므로 별도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2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 되는 경우, 그 원인과 대처방안은?

- 전통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지번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 국세청에서는 해당 지번 사업자를 발체하여 카드사 등에 통보하면 카드사 등은 신용카드 등 자료 제출 시 전통시장사용금액을 구분하여 국세청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지번을 홈택스에 잘못 등록하면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공제비율 40%)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15%, 현금영수증은 30%)으로 조회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영수증 등 전통시장 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전통시장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3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대중교통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간소화자료에 대중교통 사용금액이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승차권 등 대중교통 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34

작년에 개인연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였는데 종전 금융기관 납부액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이전 전 금융기관에서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 이전 후 금융기관의 납입금액을 확인 하시고 납입금액과 상이할 경우 연금취급기관에 문의하여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주택자금항목에 대한 공제는 공제요건 등이 검증된 것이지요?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주택자금항목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본인공제항목)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본인공제항목)이 있습니다.
- 국민주택규모, 무주택 세대주, 2주택 소유 여부 등의 소득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근로자는 공제요건 확인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자료제출기관에서 공제항목에 대하여 소득공제요건 검증없이 납입된 금액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공제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6

주택청약저축 가입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방법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1월 20일 이후에는 추가수집이나 자료정정이 불가능합니다. 저축취급기관에 근로자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며 확인서를 제출한 다음 연도부터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 또한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주택마련 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7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나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2018년 및 2019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18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였으나,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2019년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 2018년도 투자금액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더라도 2018년에 이미 소득공제를 받으셨다면 2019년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8

근로자가 기부한 금액보다 많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경우?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자료제출기관에서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경우 납부된 실제 금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공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부당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으면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 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료 제공동의 관련 FAQ

1

지난해까지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 성년(만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00. 12. 31.이전 출생자
-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온라인신청·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온라인(모바일) 또는 팩스로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PC) 홈택스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모바일) 홈택스 앱 ⇨ [신청/제출] ⇨ 연말정산 제공동의 ⇨ 제공동의 신청

2

시골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간편한지?

1. 인터넷(팩스)을 이용한 방법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한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을 첨부(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추가)하여 팩스(☎1544-7020)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온라인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을(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추가) 온라인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 자료조회자(근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의 위임장도 함께 첨부해야 함
- *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으며, 외국인 및 최근 3월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스마트폰을 이용한 방법

- 부모님이 스마트폰에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신청/제출-연말정산 제공동의-제공동의 신청]에서 '본인인증(부모님 명의의 공인인증서, 핸드폰 인증을 이용)'을 거치고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 외국인 및 최근 3월내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 가족관계 자료가 구축 되지 않아 자료제공자(부모님)와 자료조회자(근로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파일을 생성 후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하시면 됩니다.
 - * '홈택스 앱'이 없는 경우 Play스토어(또는 앱 스토어)에서 내려 받아 설치

3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의 핸드폰 등 본인인증 수단이 없고 멀리 살고 계셔서 세무서를 방문할 수 없는 데 이런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대리인이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을 대신하여 정보제공동의를 신청하는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팩스 신청,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온라인(PC에서만 가능)에서 로그인하여 위임장과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신청서(온라인에서 출력)와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1544-7020)로 전송하거나, 방문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 외국인 또는 최근 3월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하여 가족관계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

4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동의 방법은?

- 2019년 귀속 연말정산시 2001.01.01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 제공동의는 자녀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부모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여 해당 자녀의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 미성년 자녀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 [신청/제출] ⇨ 연말정산 제공동의 ⇨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 외국인이나 가족관계 변동이 최근에 발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모바일 신청, 온라인신청, 팩스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성년이 된 자녀(2000.12.31. 이전 출생)의 경우 자녀가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를 거쳐야 근로자가 자녀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 되지 않는데?

-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것이 명백한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6

어떤 부양가족이 나에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 및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제공 동의하고 있는지는 홈택스(온라인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제공동의 현황조회

(모바일) 홈택스 앱 ⇨ [신청/제출] ⇨ 연말정산 제공동의 ⇨ 제공동의 현황조회

- 또한, 근로자 본인은 「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제공동의 현황조회 ⇨ 취소
 (모바일) 홈택스 앱 ⇨ [신청/제출] ⇨ 연말정산 제공동의 ⇨ 제공동의 현황조회 ⇨ 제공동의 취소

7 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누구에게 제공되는 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누구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제공동의 현황조회
 (모바일) 홈택스 앱 ⇨ [신청/제출] ⇨ 연말정산 제공동의 ⇨ 제공동의 현황조회

- 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으려면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제공동의 취소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 [신청/제출] ⇨ 연말정산 제공동의 ⇨ 제공동의 현황조회 ⇨ 제공동의 취소

8 제공동의를 신청한 후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제공동의 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은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제공동의 신청 후 진행상황 조회
 (모바일) 홈택스 앱 ⇨ [신청/제출] ⇨ 연말정산 제공동의 ⇨ 제공동의 신청 후 진행상황 조회

- 제공동의 신청이 집중되는 1.15. ~ 1.31. 사이에는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9

자료제공 동의를 하였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공동의 취소 신청은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을 하여 취소하거나, 팩스(1544-7020)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제공동의 취소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 [신청/제출] ⇨ 연말정산 제공동의 ⇨ 제공동의 현황조회 ⇨ 제공동의 취소

10

직장인인데 의료비 등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직계존속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하는 데, 타인이 나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 근로자(직계존속)가 성인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을 하거나 팩스, 온라인으로 사전에 자료제공동의를 해야 합니다.
- 따라서, 부양가족 본인의 자료에 대해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자료제공 사전 동의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제공동의 현황은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제공동의 현황조회
 (모바일) 홈택스 앱 ⇨ [신청/제출] ⇨ 연말정산 제공동의 ⇨ 제공동의 현황조회

- 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더 이상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려면 홈택스(PC 또는 온라인)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제공동의 취소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 [신청/제출] ⇨ 연말정산 제공동의 ⇨ 제공동의 현황조회 ⇨ 제공동의 취소

11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대해 자료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병명, 신용카드 지출장소 등 상세한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되는 것이 아닌지?

- 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자료의 경우 의료기관별 의료비 지출 합계액만 알 수 있어 병명 등 상세한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신용카드 자료의 경우 카드사별 연간(월간) 합계 금액이 표시되므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12

아버지에게 자료제공동의를 하긴 했는데 아버지에게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중 의료비, 신용카드 등 일부 항목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중 본인의 자료가 조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삭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 (삭제 신청 종류) ① 공제항목별 삭제신청, ② 발급기관별 삭제신청, ③ 개별건별 삭제신청 중 선택하여 자료를 삭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으므로,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 받아 회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13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며,
 -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자료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 사망한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자료를 제공받는 자의 신분증 및 서명(직인)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 가족관계부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